

성인학습자 학사운영 규정

제정 2023.04.2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인학습자의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칙이나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성인학습자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성인학습자란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하 LiFE 사업)의 전담 학위과정으로 입학한 학습자를 말한다.
-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이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개설한 학과를 말한다.

제4조 (학과 설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은 성인학습자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촉진을 위하여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선택하여 학과 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 (수업)

-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은 학칙 및 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르되, 성인학습자는 별도의 성인학습자 교육과정에 따른다.
- 수업은 주말수업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간수업, 계절수업, 시간제수업, 집중수업 또는 원격수업에 의한 동영상 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 및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면수업의 비중은 30%이상으로 한다.
- ④ 원격수업 강좌 교과목 개설은 본 대학교 원격수업운영규정 및 교무팀 운영 계획을 따르며 성인학습자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의결 및 대학평의원회 승인을 거쳐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⑤ 성인학습자는 고등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 본교 학점인정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제7조 (휴학)

학칙 제 19조에 따르되,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재학 중 휴학기간이 총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장과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 2 (전과)

성인학습자는 학칙에서 정한 전과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학기당 취득 학점 및 학점인정)

학기당 취득 학점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계절학기)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계절학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졸업요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4학기 이상 등록한자
2. 75학점 이상 취득자

제11조 (장학금)

- ① 장학금은 LiFE사업 장학지침을 따른다.
- ②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통한 성인학습자의 국가 지원 및 지

자체를 통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중복지원 인정범위는 본교 장학규정에 준한다.

제12조 (등록 및 등록금 책정)

- ① 납입금을 납부함으로써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을 완료치 못하는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 ② 학칙시행세칙 제3조의4(성인학습자 등록)을 근거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성인학습자는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성인학습자 지원 및 성인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장,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성인학습지원 센터장, 평생교육원장,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의 학과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단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④ 본회는 성인학습자 지원, 성인학과 운영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 (자체평가)

- ① 대학의 성인학습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자체평가운영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칙, 교무·학사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0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